

2021년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1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27건(안건번호 제2021-16891호~1794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689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2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47건(안건번호 제2021-767호~81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4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9개 안건(19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자명, 블로그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8쪽~3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C, A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2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1-16891호~1794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89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

건임.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49화까지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물 이미지에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해당 웹하드에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권당 6,750원에, 전자책은 3,600원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53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1-15380호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9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892호~1794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22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승리호'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91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승리호'를 16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 2시간 17분 48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21. 2. 5.에 공개한 국내 SF 영화임.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후 시청 가능함.

(영화 '미나리'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27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미나리'를 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 1시간 55분 3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21. 3. 3.에 개봉 예정인 미국 영화임.

(출판 '재혼황후'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40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재혼황후'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재혼 황후 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1. 2. 15. 기준 네이버 웹소설에서 현재 240화까지 무료로 연재중

이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1화~240화 무료로, 241화~325회까지는 한화당 100원에 대여, 300원 구매 가능함.

(영화 '정직한 후보'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17407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정직한 후보'를 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1시간 57분 42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 2. 12.에 개봉한 국내 코미디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200원에 대여, 5,500원 구매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6892호~179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B 위원: 안전번호 제2021-16892호~17947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92호~179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91호~1794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8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67호~813호 47개 안전 중 1개 안전은 가결하고, 46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9개 안전(19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2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